



아동학대 관련 자주하는 질문

Q. “혹시나 신고자의 정보가 노출될까봐 아동학대 신고하기 두렵습니다.”

A. 아동학대 신고자는 아동학대처벌법과 공익신고자보호법,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에 의거하여 보호받습니다. 따라서 신고자에 대한 정보를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할 수 없으며, 신고자가 원할 경우 신고자의 인적사항 기재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아동학대가 의심 된다면 학대 피해아동의 안전한 보호를 위해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학대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지만, 이미 아동학대가 발생했다면 발견하였을 때, 신속하게 신고하여 피해아동을 안전하게 보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아동학대 의심 상황을 발견하면 바로 신고번호 112로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관심과 신고는 학대로 고통 받는 아이들을 지킬 수 있습니다.

